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국가교육위원회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발전계획 홍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증원하고,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5급 1명, 8급 1명)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2. 6. ~ 12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정원”을 “정원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4장(제10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한시정원

제10조(한시정원)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및 의견 수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둔다.

별표 1 중 총계 “31”을 “3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7”을 “18”로 하며, 4급 이하 “16”을 “17”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10조 관련)

제10조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5년 12월 31일)

총계	2
일반직 계	2
5급 이하	2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	제9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 정원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-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<신설>	<u>제4장 한시정원</u>
<신설>	제10조(한시정원)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및 의견 수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둔다.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9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31</u>	<u>32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17</u>	<u>18</u>	+1
•	•	•	
4급 이하	<u>16</u>	<u>17</u>	+1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08